리프트 승강장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던 중 승강로 핏트바닥으로 추락 사망

재 해 개 요

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야간에 공장건물을 순찰하기 위해 리프트 승강장 출입문을 건물 출입구 문으로 오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던 중 승강로 핏트 바닥으로 추락 (약 4.8m)하여 사망한 재해임.

재 해 사 진

<홞죎좲괢 뫎혦폚 쏛괷륾 홱폚봶됇졞륾 캶뢟홾 쇣힋졦 죎윒홾 쇎쫦>



<홞죎좲괢 뫎혦폚 쏛괷륾 홱폚봶됇웲 캶뢟홾 죇슮>



재해발생 원인(추정)

□ 안전인증을 수검받지 않고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제작·설치·사용

- 공장건물에 설치된 일반 작업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 증 대상에 해당 되는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인증을 수검·승인받지 않고 제작·설치·사용하였음.
- 추락재해 발생 당시 운반구가 공장건물 2층에 정지하고 있었을 때 지상 (1층) 승강장 안전문에 출입문 연동장치 또는 잠금장치가 미설치된 상태 였으며, 피재자가 승강장 출입문을 공장건물 출입구 문으로 오인하고 임의출입

□ 출입금지 장소에 안전문(잠금장치 등) 미설치

-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지상 1층 승강장 출입문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안전문, 방책 또는 잠금장치(자물쇠 등) 미설치

□ 야간순찰 작업 시 조명기구 미사용

- 피재자가 야간 순찰점검 시 사물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였음에도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 출입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□ 안전인증을 수검·승인받고 리프트 제작·설치·사용(산업안전보건법 제**34**조)

- 공장건물에 설치된 일반 작업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 되는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이므로 안전인증(예비심사 → 서면심사 →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→ 제품심사)을 수검· 승인받고 사용
-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정하는 「위험기계·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2012-33호」 에서 정하는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기술과 관련 기준을 준수함.
- 승강장의 출입문은 운반구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(출입문 연동장치)로 설치

□ 추락위험 장소에 출입금지(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0조)

-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승강장 주변에 추락에 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방책설치 또는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

□ 야간 순찰작업 시 휴대용 조명기구의 사용(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제21조)

-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장소를 이동하며 순찰·점검 등을 할 때 75럭스 이상의 조도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기구(랜턴 등)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